

1995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 | |
|-------------------------|-----|
| 1. 예산(안) 편성방침과 기준 | 517 |
| 2.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 | 518 |
| 가. 예산(안) 총규모 | 518 |
| 나. 세입예산(안) 주요내역 | 519 |
| 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역 | 522 |
| 3. 검토 의견 | 526 |

'95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예산(안) 편성방침과 기준

기 본 방 침

- 중앙에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정리

편 성 기 준

[세 입 예 산]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변경 내시분 조정
- 재산매각수입조정계상

[세 출 예 산]

- 중앙지원 사업분에 대한 도비 부담액 계상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 기타 필수경비 계상
- 명시이월사업 판단

2.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

가. 예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 회 계 별 | 예 산 액 | | 기 정 예 산 액 | | 증 감 | |
|---------|-------------|------|-------------|------|-------------|-------|
| | 금 액 | % | 금 액 | % | 금 액 | % |
| 합 계 | 770,413,275 | 100 | 774,481,403 | 100 | △ 4,068,128 | △ 0.5 |
| 일 반 회 계 | 611,594,227 | 79.4 | 616,510,031 | 79.6 | △ 4,915,804 | △ 0.8 |
| 특 별 회 계 | 158,819,048 | 20.6 | 157,971,372 | 20.4 | 847,676 | 0.5 |

'9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7,704억 1,327만 5천원으로서, 기정예산 7,744억 8,140만 3천원보다 0.5%인 40억 6,812만 8천원이 감액편성됨.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8%인 49억 1,580만 4천원이 감소한 6,115억 9,422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5%인 8억 4,767만 6천원이 증액된 1,588억 1,904만 8천원의 규모임.

나. 세입예산(안) 주요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 예 산 액 | | 기 정 예 산 액 | | 증 감 | |
|-----------------------------|-------------|------|-------------|------|------------|-------|
| | 금 액 | % | 금 액 | % | 금 액 | % |
| 합 계 | 770,413,275 | 100 | 774,481,403 | 100 | △4,068,128 | △0.5 |
| 일 반 회 계 | 611,594,227 | 79.4 | 616,510,031 | 79.6 | △4,915,804 | △0.8 |
| 지 방 세 | 136,005,000 | 22.2 | 136,005,000 | 22.1 | - | - |
| 세 외 수 입 | 51,667,581 | 8.4 | 51,667,581 | 8.4 | - | - |
| · 경상적세의수입 | 10,661,751 | 1.7 | 10,661,751 | 1.7 | - | - |
| · 임시적세의수입 | 41,005,830 | 6.7 | 41,005,830 | 6.7 | - | - |
| 지 방 교 부 세 | 162,096,090 | 26.5 | 160,295,882 | 26.0 | 1,800,208 | 1.1 |
| 지 방 양 여 금 | 46,934,042 | 7.7 | 46,943,067 | 7.6 | - | - |
| 보 조 금 | 148,820,293 | 24.3 | 145,856,271 | 23.7 | 2,964,022 | 2.0 |
| 지 방 재 원 | 66,062,196 | 10.8 | 75,742,230 | 12.3 | △9,680,034 | △12.8 |
| 특 별 회 계 | 158,819,048 | 20.6 | 157,971,372 | 20.4 | 847,676 | 0.5 |
| 공기업특별회계 | 136,319,410 | 17.7 | 136,319,410 | 17.6 | - | - |
| · 지역개발기금 | 84,074,522 | 10.9 | 84,074,522 | 10.9 | - | - |
|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52,244,888 | 6.8 | 52,244,888 | 6.7 | - | - |
| 기타특별회계 | 22,499,638 | 2.9 | 21,651,962 | 2.8 | 847,676 | 3.9 |
| · 의료보호기금 | 17,265,486 | 2.2 | 16,401,051 | 2.1 | 864,435 | 5.3 |
| · 대청호특별 대책지역환경 기초운영관리 | 1,910,526 | 0.2 | 1,910,526 | 0.3 | - | - |
| ·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 3,323,626 | 0.4 | 3,340,385 | 0.4 | △16,759 | △0.5 |

□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 기정예산액보다 0.8%인 49억 1,580만 4천원이 감소한 6,115억 9,422만 7천원으로서
 -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0.7%인 1,876억 7,258만 1천원이며,
 -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은 58.5%인 3,578억 5,945만원임.
 - 지정재원은 10.8%인 660억 6,219만 6천원임.

□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검토해 보면,

- 의존수입인 중앙지원재원으로는 기정예산액 3,530억 9,522만원보다 1.3%인 47억 6,417만원 증가된 3,578억 5,945만원으로서

- 지방교부세 180억 20만 8천원
- 국고보조금 29억 6,402만 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지정재원은 기정예산액 757억 4,223만원보다 12.8%인 96억 8,003만 4천원이 감소된 660억 6,219만 6천원으로서

- 재산매각수입 Δ 104억 8,109만 7천원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564만 8천원
- 기금수입 1억 7,490만 6천원
- 부담금 (노인교통비 시군부담금) 6억 1,050만 9천원이
각각 증감되었음.

□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 기정예산액보다 0.5%인 8억 4,767만 6천원이 증가한 1,588억 1,904만 8천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가 85.8%, 기타특별회계가 14.2%임.

- 의료보호특별회계는

- 전입금 1억 2,365만 3천원
- 잡수입(시군결산반환금, 이자수입) 2억 4,616만 9천원
- 국고보조금 4억 9,461만 3천원등

8억 6,443만 5천원이 증액계상됨.

- 농어촌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는

- 용자금 이자수입 229만 9천원
- 용자금 회수수입 △4,700만원
- 잡수입 3,254만원등

1,675만 9천원이 감액계상됨.

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 예 산 액 | | 기 정 예 산 액 | | 증 감 | |
|---------------------------------|-------------|------|-------------|------|------------|------|
| | 금 액 | % | 금 액 | % | 금 액 | % |
| 합 계 | 770,413,275 | 100 | 774,481,403 | 100 | △4,068,128 | △0.5 |
| 일 반 회 계 | 611,594,227 | 79.4 | 616,510,031 | 79.6 | △4,915,804 | △0.8 |
| 인 건 비 | 42,195,140 | 6.9 | 43,069,140 | 7.0 | △874,000 | △2.0 |
| 물 건 비 | 32,756,833 | 5.4 | 32,691,974 | 5.3 | 64,859 | 0.2 |
| 이 전 경 비 | 123,893,282 | 20.3 | 122,084,250 | 19.8 | 1,809,032 | 1.5 |
| 자 본 지 출 | 386,318,039 | 63.2 | 393,544,911 | 63.8 | △7,226,872 | △1.9 |
| 용 자 및 출 자 | 7,680,000 | 1.3 | 7,678,000 | 1.2 | - | - |
| 보 전 재 원 | 1,815,143 | 0.3 | 1,815,143 | 0.3 | - | - |
| 내 부 거 래 | 8,155,807 | 1.3 | 6,463,401 | 1.0 | 1,692,406 | 26.2 |
| 예비비 및 기타 | 8,781,983 | 1.4 | 9,163,212 | 1.5 | △381,229 | △4.2 |
| 특 별 회 계 | 158,819,048 | 20.6 | 157,971,372 | 20.4 | 847,676 | 0.5 |
| 지역개발기금 | 84,074,522 | 10.9 | 84,074,522 | 10.9 | - | - |
| 공영개발사업 | 52,244,888 | 6.8 | 55,244,888 | 6.7 | - | - |
|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 3,323,626 | 0.4 | 3,340,385 | 0.4 | △16,759 | △0.5 |
|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대청호특별대책 지역 | 1,910,526 | 0.2 | 1,910,526 | 0.2 | - | - |
| 의료보호기금 | 17,265,486 | 2.2 | 16,401,051 | 2.1 | 864,435 | 5.3 |

□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 기정예산액 6,165억 1,003만 1천원보다 0.8%인 49억 7,305만 5천원이 감액된 6,115억 3,697만 6천원 규모임.

□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 인건비는 기정예산의 2.0%인 8억 7,400만원이 감액됨.
- 물건비 기정예산보다 0.2%인 6,485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음성채소시험장 대체농지 조성비, 정책보좌관 자가운전비, 정무부지사제 신설 등에 계상된 것임.
- 이전경비는 기정예산보다 1.5%인 18억 903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노인승차권 배상액, 지방청사 기금조성, 국고대여장학금출연등이 증액된 것임.
- 자본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9%인 72억 2,687만 2천원이 감액된 것은 대체재산조성, 산림환경연구소이전, 교량검사기기 구입이 증감된데 기인됨.
- 용자 및 출자는 증감없음.
- 보전재원은 증감없음.
-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26.2%인 16억 9,240만 6천원이 증액된 것은 농림수산계 자영자양성 고등학교 지원비 교육청전출에 따른 것임.
-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보다 4.2%인 3억8,122만 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예비비가 증감된데 기인함.

□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 | |
|-------------|--------------------|
| - 의회비 | 28억 6,527만 6천 원 |
| - 일반행정비 | 580억 5,347만 1천 원 |
| - 사회복지비 | 749억 6,429만 8천 원 |
| - 산업경제비 | 1,598억 8,217만 9천 원 |
| - 지역개발비 | 2,030억 1,149만 4천 원 |
| - 문화 및 체육비 | 222억 6,001만 9천 원 |
| - 민방위비 | 207억 6,987만 5천 원 |
| - 지원 및 기타경비 | 697억 3,036만 4천 원 |

이며,

□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첫째, 인건비 및 기준경비인 법정 필수경비로는

| | |
|------------|--------|
| - 인건비, 예비비 | △14억원 |
| - 경상사업비 | 1억원이며, |

둘째, 의무적 경비로는

| | |
|---------------------|------|
| ○ 비도지정사업에 | |
| - 국고보조사업 | 40억원 |
| - 지방교부세 사업 | 1억원 |
| - 중앙기금지원사업 | 2억원 |
|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 1억원 |
|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 1억원 |
| ○ 노인승차권교부에 따른 추가소요액 | 9억원 |

셋째, 경정재원으로는

6·27 지방선거비용 정산결과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10억원을 감액
경정재원으로 계상

□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 자치단체이전 7억 4,064만 8천원
- 용자금 △1억 2,238만 2천원
- 예비비 2억 4,616만 9천원을
계상함.

○ 농어촌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는

- 용자금 △ 7,000만원
- 예비비 5,423만 1천원이
계상되었음.

3. 검토의견

-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 각 부처로부터 교부결정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교부세등의 추가지원으로 도정시책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한 예산조정과 년내 확보가 불가피한 필수경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결산예산의 일면으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744억 8,140만 3천원보다 40억 6,812만 8천원이 감소한 7,704억 1,327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6,115억 9,422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588억 1,904만 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편성예산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일부 부서에 계상된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성격상 경상비는 이월집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예산성립후 집행기한이 1주일 이내인 것을 감안하면 이시점에서 예산의 필요성이 의문시되며, 또한 계상부서도 일부 부서에 국한되어 있어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명시이월비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명시이월비는 8개사업에 112억 9,744만 8천원 규모입니다.
'95년도에 동사업의 추진이 어떤 이유로 지연되었는지 또한 그 사유는 정당한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